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67
------	-----

2021.09.0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08월 07일, 이동현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0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08.3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9.8.)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동현 의원)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서울시도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

- 서울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계획하며 관련 정책의 수립 시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셜벤처의 요건을 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소셜벤처 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소셜벤처의 정의(안 제2조)

- 소셜벤처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근거 법령이 미비하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며,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임.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사회성’ 과 ‘혁신성장성’ 을 바탕으로 소셜벤처를 판별하고 있음.
-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로 소셜벤처를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별도로 소셜벤처를 정의하진 않았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별표를 참고하여 사회성, 혁신성장성 두 가지 기준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선정 중에 있음.
- 안 제2조는 소셜벤처를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이라 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소셜벤처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모두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기업의 혁신성과 벤처기업의 특화된 내용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제5조~제6조)

- 안 제3조는 소셜벤처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사회적가치 실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의 추진 의무를 서울시장(이하 “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5조는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에게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3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소셜벤처 생태계 환경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환류하는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소셜벤처의 요건 및 확인(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소셜벤처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8조는 각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소셜벤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제외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법인의 해산·청산 중 소셜벤처 기부¹⁾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1인 창조기업, 「민법」상의 법인·조합, 「상법」상의 회사·합자조합 등도 소셜벤처로 분류할 수 있음.

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소셜벤처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요건 비교>

안 제7조(소셜벤처의 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사회적경제기업”의 요건)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 <정관·규약 등에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4.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최근 사회적 가치(Creating Shared Value)의 창출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한 기업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고, SK 등 대기업에서도 정관에 사회적 가치를 경영원칙으로 반영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에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 소셜벤처로 인정하게 되면 소셜벤처의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소셜벤처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안 제8조에 따른 소셜벤처의 확인은 소셜벤처의 요건을 바탕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제11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소셜벤처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법」²⁾ 및 「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2)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의 협동조합 위원회의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³⁾.

바.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셜벤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민간위탁의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연계, 협업공간 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인 지원센터를 설치(2019.10.)할 예정임.
- 따라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소셜벤처를 보육·양성할 수 있게 되어 소셜벤처의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7조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구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사.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안 제13조부터 제20조)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경영지원(안 제13조), 시설비, 불용물품 등 지원(안 제14조), 사회투자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안 제15조),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안 제16조), 우선 구매 촉진(안 제17조), 협의기구 등의 지원(안 제19조), 국제 협력 지원(안 제20조) 등임.
- 이상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과 인프라의 제공은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협의기구와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국내·외 소셜벤처 인식 제고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 종합의견

-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업유형인 소셜벤처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는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소셜벤처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인 바, 명확하고 통일된 소셜벤처의 정의와 요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소셜벤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제공 중인 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분야의 통합적 연계와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유사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중복·상충 문제를 우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위원회 구성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소셜벤처 기본계획을 종전의 3년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함(안 제5조, 안 제6조).

- 소셜벤처의 법적요건이나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확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7조, 안 제8조).
- 소셜벤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소셜벤처지원센터’를 현행 기관명칭에 부합하도록 ‘소셜벤처허브’로 수정함(안 제12조).
- 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무상임대와 불용물품 무상양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4조).
- 사회투자기금의 소셜벤처에 대한 사용 근거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15조).
-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소셜벤처 제품 우선 구매 지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16조, 안 제17조).
- 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18조).

- 소셜벤처 협의기구,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함(안 제19조).
- 소셜벤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20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7
----------	--------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0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위원회 구성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소셜벤처 기본계획을 종전의 3년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함(안 제5조, 안 제6조).
- 소셜벤처의 법적요건이나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확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7조, 안 제8조).
- 소셜벤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소셜

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9조).

- '소셜벤처지원센터' 를 현행 기관명칭에 부합하도록 '소셜벤처허브' 로 수정함(안 제12조).
- 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무상임대와 불용물품 무상양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4조).
- 사회투자기금의 소셜벤처에 대한 사용 근거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이므로 삭제함(안 제15조).
-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소셜벤처 제품 우선 구매 지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삭제함 (안 제16조, 안 제17조).
- 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 사업 운영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18조).
- 소셜벤처 협의기구,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한 지원은 관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함(안 제19조).
- 소셜벤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20조).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목을 “실태조사 및 평가”로 하고, 제1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안 제9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중전의 안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 제10조(중전의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12조(중전의 안 제15조) 제목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중전의 안 제16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를 각각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14조(중전의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안 제20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중전의 안 제22조)제1항 중 “소셜벤처에” 를 “소셜벤처”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셜벤처”란 <u>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를 말한다.</u></p> <p>2. “소셜벤처 생태계”란 <u>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u></p> <p>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p> <p>4. “사회성과”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성과를 말한다.</p> <p>5.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u>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셜벤처”란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2조제10항에 따른 <u>소셜벤처기업</u>을 말한다.</p> <p>2.~ 3. (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p>4. (안 제5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기본계획의 수립·시행</u>을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조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u>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p>

제정안	수정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소셜벤처의 요건) ①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p> <p>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p> <p>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법인·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소셜벤처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p> <p>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p>	<p>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u>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u></p> <p>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p> <p>4.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p> <p>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 <p>제8조(소셜벤처의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셜벤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신설></p>	<p><삭제></p> <p>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제정안과 같음)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안	수정안
<p>3.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p>	<p>4. (안 제3호와 같음)</p> <p>제8조 (안 제10조와 같음)</p> <p>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소셜벤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소셜벤처 공간, 회의장, 운영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소셜벤처 발굴에 관한 사항</u> 4. <u>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신설></p> <p><신설></p>	<p>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u> 2. <u>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u> 3. <u>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u> 4. <u>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u> 5. <u>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u> 6. <u>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u> 7. <u>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u>

제정안	수정안
<p>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p> <p>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p><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 (안 제13조와 같음)</p> <p><삭제></p> <p>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제정안	수정안
<p>4. 소셜벤처 공간 지원</p> <p>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u>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u></p> <p>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u>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u>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u>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7조(우선 구매 등 지원) ① 시장 또는 <u>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소셜벤처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소셜벤처의 재화나 서비스</u></p>	<p>4. 소셜벤처 공간 지원</p> <p>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제></u></p> <p>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u>시장은</u>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u>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제정안	수정안
<p><u>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소셜벤처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u></p> <p><u>제18조(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 ①</u> <u>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p> <p><u>제19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지원) 시</u> <u>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로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소셜벤처 협의기구나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20조(국제 협력 등 지원) ①</u>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②</u> 시장은 <u>소셜벤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u>제21조(지도·감독) ①</u>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u>②</u>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u><삭제></u></p> <p><u>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u> <u>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삭제></u></p> <p><u>제16조 (안 제21조와 같음)</u></p>

제정안	수정안
<p><u>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u>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셜벤처</u>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u>제2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u>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셜벤처</u>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안 제2항과 같음)</p> <p><u>제18조</u> (안 제23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4. 소셜벤처 공간 지원
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